

#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03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0. 11. 5.  
발 의 자 : 나정숙 의원 외 9인

## 제안이유

-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 주요골자

- 시장 소속하에 안산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두고,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사회적기업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두고,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인증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지원센터는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- 시장은 관계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국·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「지방세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을 관

계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으며,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와 판로개척에 노력하도록 함(안 제12조).

- 지역 내 민간기업·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구하도록 함(안 제14조).

제정조례안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.

#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(안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적기업” 이라 함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기업으로 안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.
2. “예비사회적기업” 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,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안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.
3. “취약계층”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.
4. “사회서비스” 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.
5. “연계기업” 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.

**제3조(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)** ①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이하 “사회적기업 등”이라 한다)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산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안산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계획에 관한 사항
  2. 제4조의 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3. 제16조 운영세칙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 4.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은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시 사회적기업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1. 시의회 의원
2.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사회적기업 등 운영자 및 종사자
4. 안산사회적기업지원센터 대표
5. 서비스 이용자
6. 연계기업 관계자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에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⑧ 회의는 연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⑨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예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 (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안산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의 수립
2.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
3.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인증지원
4.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

5.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연구 개발
6.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
7.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의 개발
8. 민·관 협력 및 연계사업
9.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,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
10. 사회적기업 등의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
11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위탁운영 등)**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사회적기업 등 육성지원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,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6조 (기업연계 등)**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(연계기업)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연계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시설비 등 지원)** ① 시장은 관계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국·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.

**제8조(재정지원)**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

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을 공모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한다.

③ 제2항의 재정지원에 대한 신청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기업의 명칭,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2.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
3.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
4.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
5.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
6. 임·직원 구성(유 무급 포함)에 관한 사항
7.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재정지원기관에서 요청한 사항 등

**제9조(조세감면)**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는 「지방세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**제10조(목적 외 사용금지)**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금을 해당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지원금이 목적이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1조(교부 및 보고, 정산 검사 등)** ①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하며, 교부시기 및 방법은 사업계획으로 정한다

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「안산시 보조금 관리조례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며,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,

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감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2조(우선구매 등 지원)**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와 판로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)** 시장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총점의 10% 범위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.

**제14조(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)**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·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1. 지역 내 민간기업·단체 간 교류·협력 네트워크의 구축·운영 지원
2.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
3.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

**제15조(홍보 등)**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1. 지역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
2.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
3. 전문가 포럼,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

**제16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037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0. 11. 18.

제 안 자 : 경제사회위원장

## 1. 수 정 이 유

- 조문내용을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수정하고, 관련 근거 법령을 추가함.

## 2. 주 요 골 자

-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범위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(안 제3조).
-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시 총점의 10% 이내에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
# **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수정안**

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3항의 “임명 또는 위촉하되”를 “위촉하되”로 “담당 국장은”을 “업무담당 국장은”으로, 각 호의 4 “안산사회적기업지원센터 대표”를 “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대표”로, 제9항 “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”는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“추진을 위하여”는 “육성 지원을 위하여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“3년으로”는 “3년이내로”로 한다.

제13조는 “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총점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.”로 한다.

## 조문대비표

별의안	수정안	비고
제3조(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) ①(생략) ②(생략)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<u>임명 또는 위촉</u> 하되, 시 사회적기업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1. ~ 3. (생략) 4. <u>안산사회적기업지원센터 대표</u> 5. 6. (생략) ④ ~ ⑧ (생략) ⑨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3조(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) ①(원안과 같음) ②(원안과 같음) ③ ..... ..... <u>위촉</u> 하되 시 사회적기업 <u>업무</u> 담당 국장은 ..... ..... 1. ~ 3. (원안과 같음) 4. <u>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대표</u> 5. 6. (원안과 같음) ④ ~ ⑧ (원안과 같음) ⑨ ..... ..... 「 <u>안산시 소속위원</u>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
제4조 (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<u>추진을</u> 위하여 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제4조(지원센터의 설치 등)..... ..... <u>육성 지원을 위하여</u> ..... .....	
제5조(위탁운영 등)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<u>3년으로</u>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.	제5조(위탁운영 등)①(원안과 같음) ② ..... .....	
제13조 (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) <u>시장은</u> 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총점의 10% 범위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.	제13조 (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) <u>시장은</u>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「 <u>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 조례</u> 」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총 점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.	